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98호
- 나. 제 안 자 : 서윤기의원(찬성의원 44명)
- 다. 제안일자 : 2018년 8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한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왔음.
-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 발표 이후, 사회발전과 공공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자체보다는 시민 행복 증진에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행복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의 행복중심으로

서울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복”과 “행복 격차”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시민 행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0).
- 마.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행복 격차 지표를 개발하고 그 측정 결과와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
- 아. 행복영향평가, 행복인지 예산, 행복 증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서울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행복에 대한 논의와 관련 지수 도입 현황

- 국가간 비교를 위한 각종 통계지표는 대부분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우리나라도 이런 주류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최근 국제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경제적 번영이나 물질적 측면 외의 삶의 질이나 행복 등과 같은 정신적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UN은 2012년 국가별 행복지수(Life Evaluation Score)를 측정한 ‘제1차 세계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한 후 제2차와 제3차 보고서(2013년, 2015년)를 연이어 발간하는 등¹⁾ 행복지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1) 1인당 GDP, 기대수명, 관용, 인생선택의 자유 등을 지표로 측정하고 있으며 2016년 조사에서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55위를 기록함.

- OECD도 2011년부터 ‘더 나은 삶을 향하여(Better Life Initiative, BLI)’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36개 국가의 삶의 질을 물질적 조건과 주관적 삶의 질을 함께 발표하였음²⁾.
- 이 밖에, 부탄은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을 국가 통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선진 국가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국가별 시민행복 측정 지표〉

국 가	행복지표	측정지표
부 탄	GNH(Gross National Happiness)	9개 영역 33개 지표 (삶의 수준, 건강, 교육, 공동체 활력 등)
영 국	National Wellbeing	10개 영역 42개 지표 (개인행복감, 관계, 건강, 일, 개인재정 등)
캐나다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8개 영역 64개 지표 (건강한 인구, 생활수준, 커뮤니티 활력, 교육등)
뉴질랜드	QLS(Quality of Life Survey)	8개 영역 30개 지표 (건강과 웰빙, 범죄와 안전, 커뮤니티 등)
네덜란드	LSI(Life Situation Index)	8개 영역 19개 지표 (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사회참여 등)

- 한편, 국내에서도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주민 행복도 조사’³⁾를 비롯해 유사한

2)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는 물질적 조건(소득, 직업, 주거 등)과 주관적 삶의 질(건강상태,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을 함께 조사해 현재 웰빙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발전을 도모함.

3)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와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한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이용한 12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이처럼 세계기구와 여러 정부에서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⁴⁾.

다. 서울시와 시민행복에 대한 논의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통해 서울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있음⁵⁾.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과 도시 경쟁력과는 달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세계 도시간 삶의 질을 비교한 최근의 조사에서 서울은 74위를 기록하였으며⁶⁾,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머서(MERCER)가 세계 주요 도시 주재원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을 조사한 순위에서도 79위의 낮은 순위를 보였음⁷⁾.

영역, 46개 지표를 활용해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복도를 측정하였음. 그 결과 과천시 가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으며, 서울에서는 송파구(3위), 서초구(4위), 강남구(8위)가 10위 내로 조사되었음.

4) 변미리(2015, 「서울시민의 행복 체감도와 행복지표 활용방안」, 서울연구원)에 의하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체로 소득, 나이, 교육과 건강, 여가활동, 신뢰와 네트워크, 실업과 인플레이션, 개인적 특성인 성격 등 대략 7가지로 분류됨.

5)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가 공개한 2017년 세계 도시 경쟁력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에서 서울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6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받음.

6) Quality of Life for City 2018 (by NUMBEO)

7) 머서는 주요 도시의 주재원을 상대로 정치 및 사회적환경, 경제적여건, 사회문화적

- 서울시가 실시한 ‘2017 서울서베이’ 에서도 서울시민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97점에 불과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과는 대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⁸⁾.
-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으로 외형적 경제 성장과 실질 시민 행복감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즉, 서울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서울형 행복 지표’를 구성·측정 했으며(2015, 서울연구원),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생활상을 측정하는 ‘희망서울 생활지표’를 공개하고, 지난 4월 서울 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형 행복지표’를 개발하였음(참고자료 1).
 - 또한, 매년 4만 5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서울서베이 조사 자료를 활용해 서울형 행복지표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임.
- 참고로, 최근 정부는 ‘국정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형 행복지수의 개발과 도입을 공론화했고, 종로구가 ‘주민행복정책’ 사업을 진행

환경, 의료 및 위생 여건, 학교 및 교육, 공공서비스 및 교통시스템, 여가시설, 소비자 상품, 주택, 자연환경 등의 평가영역에서 39개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빈이 9년 연속 1위를 기록함.

8) 유엔 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UN SDSN)가 소득수준,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관용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18(World Happiness Report 2018)’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0점 만점에 5.875점을 받아 조사대상 156 개 나라 가운데 57위를 기록했음. 국가별로 구매력, 오염도, 소득대비 주거비, 생활비, 안전, 의료서비스, 교통체증, 기후 등의 항목을 통해 삶의 질 차이를 조사한 다른 조사(Quality of Life for Country 2018)에서 한국은 27위를 기록한 바 있음.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39개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실감 지방정부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주민행복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⁹⁾.

라.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1) 행복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행복을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행복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¹⁰⁾로 정의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자연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행복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¹¹⁾.
- ‘행복’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조례안은 조례의 법적 범위와 물리적 한계 등을 고려한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포함해 행복을 정의한 것으로 이해됨.

9)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종로구와 경상남도 의령군, 부산광역시 동구, 경기도 광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이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위원회, 행복마을, 행복센터 등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10) 표준국어대사전

11) 현재 자치법규를 제정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행복을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로 대체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는 행복의 정의는 서울시가 관련 지수와 측정지표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분명히 구체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안 제3조, 제6조부터 제10조)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마련 책무 등을 부여하고, 행복추구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4년 단위의 행복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도 함께 부여함.
- 기본계획에는 ▷ 행복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전략, ▷ 분야별 주요시책과 추진체계, 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행복격차 해소방안, ▷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자원조달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하였음.
- 이처럼 서울시 행복정책의 이정표가 될 기본계획 수립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수립부터 시민의 참여와 수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4개년계획의 비전인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과 큰틀에서 일치하고 있어 행복추진 정책 수립과 관련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복 가치를 추구하는 유사 계획의 중복 수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기존의 시정4개년 계획을 비롯한 유사계획과의 차별화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안 제8조와 제9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관련 단체·기관, 자치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시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정책목표가 서울시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민·관 이해관계자의 협조는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시장의 협조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는 민간단체와 기업에게까지 이를 의무화하도록 한 안 제8조제2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 3) 행복실태조사, 행복지수, 행복 격차 지표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
- 안 제10조는 시민의 행복실태와 각종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이 결과를 분석·평가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데 필요한 ‘행복지표’의 개발·보급, 행복지표를 지수화한 ‘행복지수’의 측정과 결과 공표, 그리고 이들 지수 측정에 따른 격차 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생활상을 측정하는 지표인 ‘희망서울 생활지표’를 측정·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서울형 행복지표’를 서울연구원을 통해 개발하였음.
- 또한, 매년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울서베이’도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조사하고 있음.
- 시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행복지표와 지수의 개발·보급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행복지표와 지수가 시민의 행복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유사 지표와의 차별성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시민행복위원회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실태 조사의 활용과 평가, 행복지표와 지수의 활용, 각종 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밖에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과 유연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최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각종 자문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사위원회 존재여부 사전 검토와 위원회 일몰제 등 각종 위원회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¹²⁾에서도 심의사항이 유사·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을 금하고 있음.
- 시민행복위원회는 행복증진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간 격차 해소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비롯해 유사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민선 7기 시정4개년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는 ‘더 깊은 변화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음(참고자료 2).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유사기능 위원회 간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합 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안에도 검토가 요구됨¹³⁾.

12)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이 밖에도 서울시에는 현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사항에 대한 심의·

5) 행복영향평가(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계획과 사업 등에 대한 행복영향평가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음.
- 행복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와 달리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행복영향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것도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6) 행복인지 예산(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행복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가 예산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행복인지 예산은 시민 행복 증진이라는 정책목표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자문을 위한 ‘시민건강위원회’,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시정의 행복가치 중심 계획을 수립하는 77명 규모의 ‘시정계획자문단’이 구성·활동중임.

- 다만, ‘행복’이라는 공공 가치의 비교 대상이 없어 예산 수혜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이나 집행 및 결산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2013년부터 시행중인 ‘성인지 예산’의 경우는 비교대상이 명확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작성지침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행복인지 예산의 선도적 도입에 앞서 구체적인 행복사업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7) 행복증진 교육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

- 안 제16조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증진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는 행복증진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가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관련자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 가정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효과성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 밖에 안 제17조와 제18조는 행복증진사업과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사무 위탁과 행복증진 환경 조성을 위한 각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두고 있음.

- 이는 시민 행복증진 관련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안 부칙은 본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복증진 지표 및 지수의 개발과 행복영향평가 및 행복인지 예산 등 조례 제정 이후에 실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준비·예방하는 조치로 판단됨.

담당조사관	연 락 처
박 태 현	2180-8055

【참고자료 1】

희망서울 생활지표

□ 희망서울 생활지표 체계 : 3대 영역, 9개 분야, 88개 지표

영역	분야	지표				
개인 가정 생활 (30)	주거와 생활 (10)	• 주택점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	• 공공임대주택 비율	• 장기전세주택 거주세대 수	
		• 연도별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 거주지역 주거환경 만족도	• 통근과 통학 소요시간	
		• 전통시장 이용 빈도 및 만족도	• 서울 계속 거주 의향			
	가족과 가정 생활 (10)	• 서울 평균 가구원수	• 평균 초혼연령	• 가사노동 부담정도	• 개인 삶의 만족도	
		• 가정생활 만족도	• 가족생활 가치관	• 상담시설 이용 청소년 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세대수	
		• 독거어르신 비율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건강과 보건 (10)	• 서울시민의 월평균 근로시간	• 기대수명	• 규칙적 운동 비율	• 주관적 건강상태	
		• 정기 건강검진 수검률	• 성인 비만율	• 성인 남성 흡연율	• 성인 월간 음주율	
		•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보급률	• 인구 10만명 당 의료기관 수			
	사회와 사회 활동 (30)	경제 생활 (10)	• 서울시민1인당소득	• 가구부채율 및 부채유형	• 서울 시지역내 총생산 (GRDP)	• 실업률
• 고용률			• 직업(일자리)만족도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기업 창업과 생존율	
• 서울시 일자리 창출수			• 어르신 공공 일자리 수	•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수	•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수	
교육과 보육 (7)		• 거주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국공립 어린이집 수	
		• 어린이집 만족도	• 공공도서관 수	• 저소득기정학생 장학금지원수		
안전과 교통 (13)		• 시민이 느끼는 도시 위험도	• 5대범죄 발생건수	• 교통사고 인명 피해수	• 여성안심무가 서비스 등록지수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률	• 도시안전지수	•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현황	
		• 저상버스 운행 대수	•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	• 자동차전용도로 포트를 발생 건수		
환경 (28)		문화와 관광 (7)	•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률	• 문화여가 지출비용	• 시민1인당 공공 체육시설 면적	• 거주지역 문화환경 만족도
			•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 외래관광객 재방문 의향	• 한양도성 보존 및 정비 길이	
	자연과 생태 (7)	• 환경 소음도	• 초미세먼지 농도	• 한강수계 수질 오염도	• 시민 1인당 물과 전력소비량	
		• 생활폐기물 발생량	• 온실가스(CO ₂) 배출량	•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인구· 거버 년스 (14)	• 인구규모	• 출산율	• 부양비율 및 노령화 지수	• 장애인 현황	
		• 장애인 현황	• 서울시 공무원수 (공무원 1인당 시민수)	• 소방관, 경찰관 1명당 인구수	• 서울시 청렴도 측정결과	
		• 시민 1인당 서울시 채무부담액	• 시 전체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 마을번호사와 세무사 무료상담 건수	• 120다산콜 이용시민 만족도	
		•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수혜자수			

서울형 행복지표(2015)

□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 : 11개 영역, 24개 지표

■ : '생활지표'와 중복(유사)되는 지표(16개)

영역	지표	산출방식	비고
경제	■ 소득만족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정도	정성
	경제활동인구	전 인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	정량
주거	■ 주거비	가계수입에서 주택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정량
	1인당 평균 사용 방 수	방수 / 가구원 수	정량
	기본 시설 측면	화장실 수 / 가구원 수	정량
일자리	직업안정성	지난 6개월간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정량
	■ 개인 수입	정규직의 연간 평균 수입	정량
	■ 고용률	15~64세의 고용률(연간)	정량
	■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연간)	정량
인적역량	교육능력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	정량
	교육정도	25~64세 중 고등교육 이수율	정량
	■ 교육만족도	교육환경에 만족하는 정도	정성
환경	■ 수질 오염	수질 만족도	정성
	■ 환경 오염	미세먼지 농도	정량
커뮤니티	사회적 유대	필요할 때(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정성
시민참여	■ 자원봉사율	자원봉사 참여 비율	정량
	투표율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투표인 수/등록인 수)	정량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나쁘다로 평가	정성
	■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	정량
안전	■ 살인율	인구 100,000명당 살인건수	정량
	■ 폭행률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 경험	정량
문화 여가	■ 문화여가시간	개인의 문화와 여가에 보내는 시간	정량
	■ 삶의 균형	장시간 근무비율	정량
생활만족도	■ 생활만족도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정성

서울의 도시역량과 삶의 질 지표체계(안)

□ 지표 체계 : 10개 영역, 24개 지표

영역	지표	산출방식
주거	주거비	가계수입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1인당 평균 사용방수	방수/가구원수
	기본 시설 측면	화장실 수/가구원수
일자리	직업안전성	지난 6개월간 고용되어 있는지의 여부
	개인수입	정규직의 연간 평균 수입
	고용률	15~64세의 고용률(연간)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연간)
기술혁신과 교육	교육능력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
	인터넷보급률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
	교육정도	25~64세 중 고등교육 이수율
교통환경	수질오염	수질 만족도
	환경오염	미세먼지 농도
	도로포장율/도로연장	도로의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지표
	인당 공원면적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 면적
커뮤니티	사회적 유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시민참여	법률 제정에서의 협의	법률제정에서의 투명성 수준
	투표율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투표인수/등록인수)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나쁘다로 평가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생존연수
안전	자살율	인구 100,000명당 자살건수
	폭행률	폭행률
문화여가	문화시설수	기반시설로서 문화예술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콘서트홀 수
	문화여가시간	개인의 문화와 여가에 보내는 시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주관적 웰빙 측정(0점~10점)

서울형 행복지표(2018)

영역	세부영역	지표	설명
경제	경제활동	소득만족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정도
		평균소득	월평균소득
		경제활동인구	전 인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
	경제적 다양성	사업다양성	사회적 기업 고용자 수
		공유기업	공유기업 수
일자리	일자리	직업안정성	지난 6개월간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연간)
		직업만족	직업만족도
인적 역량	교육	교육능력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
		교육정도	25~64세 중 고등교육 이수율
		교육만족도	교육환경에 만족하는 정도
건강/안전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나쁘다로 평가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 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
		정신건강	스트레스 정도
	안전	살인율	인구 100,000명당 살인건수
		폭행률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경험
		야간안전	밤거리 안전도
문화/시간	문화/여가	문화환경 만족도	서울의 문화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문화생활 참여정도	문화생활 참여율
		예술활동 참여도	예술활동 참여율
	시간 활용	근로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
		수면시간	하루 평균 수면시간
		일과 여가 균형정도	장시간 근무 비율
사회관계	연결망	연결망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사회적 유대	편안한 사람들(친구, 가족)과 식사를 하는 시간
		자원봉사율	자원봉사 참여 비율
		투표율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배려정도
	공동체	가족 신뢰	가족 신뢰도
		이웃 신뢰	이웃 신뢰도
		공공 신뢰	공공기관의 신뢰도
		계층 이동 가능성	계층 이동 가능성
		공동체의식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거주환경	주거환경	주거비	가계수입에서 주택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환경오염	미세먼지 농도
		공원	1인당 공원면적
	교통	보행환경	보행환경 만족도
		대중교통만족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의 시민이용만족도
생활만족	생활만족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감정	즐거움/행복 정도
		부정적 감정	근심/걱정/우울 정도

【참고자료 2】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위원 현황

□ **인원 : 56명**(※기획위원회에는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 8명 포함)

연번	소관분과	성명	소속	비고
1	기획위원회 (14명)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위원장
2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미래위원회
3		민만기	(사)녹색교통 공동대표	
4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람위원회
6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7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민주위원회
8		신윤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9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미래위원회 위원장
10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도시위원회 위원장
11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사람위원회 위원장
12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안전위원회 위원장
13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일상위원회 위원장
14		송문식	함께강동 이사장	민주위원회 위원장
15	미래 (14명)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분과위원장
16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경제/스마트도시
17		임규건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제/스마트도시
18		양현모	전략컨설팅 집현(주) 대표이사	경제/스마트도시
19		김경서	(주)다음소프트 이사회 의장	경제/스마트도시
20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소장	경제/스마트도시
21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경제/스마트도시
22		김민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 대표	청년
23		조금득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트레이너	청년
24		고정은	전 마콜컨설팅그룹 매니저	청년
25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노동
26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노동
27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기획위원, 경제민주화
28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경제민주화

연번	소관분과	성 명	소 속	비고
29	도시 (8명)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30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도시주거
31		홍미영	(주)도시건축 집단 아름 소장	도시주거
32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주거
33		양동수	더함 대표	도시주거
34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도시주거
35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사회적경제
36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Seeds) 이사장	사회적경제
37	사람 (9명)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분과위원장, 여성
38		남기철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복지
39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40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41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복지
42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건강
43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과 교수	건강
44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위원, 여성
45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
46	안전 (9명)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분과위원장, 환경
47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위원장	환경
48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환경
49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환경
50		강태선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안전
51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안전
52		정규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안전
53		김태완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교통
54		이진선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교통
55	일상 (4명)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문화
56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문화
57		권두승	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교육
58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

연번	소관분과	성 명	소 속	비고
59	민주주의 (7명)	송문식	함께강동 이사장	분과위원장
60		정선애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혁신
61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혁신
62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협치
63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기획위원, 협치
64		임경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	협치
65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치